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8. 3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1년 8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1년 8월 31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정 호

가. 개정이유

동 폐지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2011년 5월 23일 (법률 제10700호)로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고 2011년 8월 24일자로 시행되어 공무원의 구분 중 고용직공무원의 호칭이 완전 삭제됨에 따라 기존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가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11. 5. 23자로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중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제4호의 고용직 공무원 폐지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폐지가 통보되어 우리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1-52
----------	-------

제출년월일 : 2011.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폐지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23)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23)에 따른 고용직공무원 폐지

나.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함.

3. 폐지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제4호

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폐지 통보 (서울특별시 인사과-106374, 2011.5.23)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1-550호 (공고 심사필 제624호)

· 기간 : 2011.07.14 ~ 2011.08.03 (제출된 의견 없음)

(2) 제16회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2011.8.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